



CCTV에 찍힌 사랑의 태



정리. 김문중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연속교육팀

학교 체벌 보도와 초상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818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친구’(2001년)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이다. 재미있는 대사로 패러디까지 된 이 장면에는 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선생님의 모습이 나온다. 만일 같은 장면이 오늘날 학교에서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 몇몇 교육청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교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체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보도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가령 언

론이 학교 체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체벌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하는 경우,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케 하지는 않을까? 학교 체벌 보도의 문제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 정당한 훈육의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실무 수습 중인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조정사례를 각색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으로 임의로 나뉜 로스쿨생들이 각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제는 ‘학교 체벌 보도의 문제점과 초상권 침해’였는데, 주





요 쟁점은 ① 사립 고등학교 교장대행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CCTV에 촬영된 학생 체벌 장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정정보도청구의 입증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등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진행된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사례에 소개된 보도 사진은 CCTV 촬영 장면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침해되는 초상권과 보도로써 달성되는 공익 중 어느 가치가 우월한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풍성한 논의를 위해 ① 고등학교 교장대행인 신청인이 공인이 아니고, ② 해당 사진으로 신청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다음은 해당 쟁점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I 사건 개요

모 인터넷 신문(피신청인)은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대행(신청인)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CCTV 화면을 게재하였다. 게재된 CCTV 화면은 복도에서 벌을 서던 학생의 머리를 신청인이 때리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단지 꿀밤을 몇 차례 쥐어박은 것에 불과하고 CCTV 화면이 실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II 토론 내용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는 면책요건으로서의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초상권이 '

거절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다수의 판례도 동의한 범위 내의 초상 촬영, 공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학교의 교장 직무대행으로서 CCTV의 설치와 상시 촬영 중임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면책될 수 있는 보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안지연(고려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에서 CCTV가 학내에 설치되어 있고, 상시 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CTV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학내 CCTV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CCTV의 설치만으로 개인의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등의 기본권의 제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CCTV에 의한 촬영을 일반 사진 촬영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CCTV는 흔히 감시 카메라로 사용이 되고, 일반 사진 촬영처럼 정면에서 포커스를 두어 드러나게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CCTV는 거기에 촬영되는 사람들에 의해 설치동의가 된 것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찍히는 것 즉,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동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촬영을 알고 있었으니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상권의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촬영된 초상이 이용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언론의 알 권리인 공익과 사인의 초상권 침해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본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CCTV 화면을 공개해야만 했을까요? 본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CCTV가 공개된 것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CTV 화면 공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써 보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신청인측이 이를 범죄보도라고 생각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CCTV 화면 공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삽화 및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문에서 범죄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대신 이를 묘사한 삽화를 대신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의 문제없이 범죄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본 보도에서 CCTV 화면의 게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화면에 도대체 왜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미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언론사의 실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청인측 - 오정미(인하대 로스쿨)

신청인측은 CCTV 화면 공개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CCTV 화면을 공개한 보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인인 교장의 체벌은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체벌로써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다. 판례도 사생활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되는 사안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의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고찰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보도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러한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언론의 역할을 다한 적법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측 - 안지연(고려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은 보도 내용 자체의 알 권리와 CCTV 공개를 통해 야기되는 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알 권리를 혼합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피신청인측이 주장한 대로 당 사안의 체벌이 위법해서 보도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안의 기사내용 자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CCTV 화면의 게재 자체는 단순히 독자들의 호기심을 야기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알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신정아 씨 사건보도와 관련해서 신정아 씨의 알몸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던 문화일보에 대

해 1심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기사게재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고, 그것은 단지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던 사안에 대해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신문 판매량의 증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신정아 씨의 알몸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CCTV 화면의 게재는 국민의 호기심 자극에 불과할 뿐,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단순한 국민들의 호기심 충족을 이유로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신청인측은 문화일보의 '신정아 알몸 보도사건'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서의 알 권리는 초상권보다 우월한 보호가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아 사건이 여성의 알몸이라는 매우 은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보도임에 비해 이번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공적 장소인 학교에서 수행하는 공적 업무에 대한 보도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청인의 초상권은 보호가치가 작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화면 공개가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침해 정도가 비교적 적는데 비해 보도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측 - 오정미(인하대 로스쿨)

2011년 서울시 및 경기,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체벌로부터 학



생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체벌을 정당한 징계의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8항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여 체벌을 위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허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히 불법적인 체벌로, 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신청인은 학교장으로서 이미 복도에서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을 '또 너냐'며 다분히 주관적인 이유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는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을 이중 처벌하는 것으로서 교육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등이 아닌 머리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체벌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전통적으로 영미국가 및 유럽 등 서양문화권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적, 절대적으로 금지해 오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사랑의 회초리'란 말이 생길 정도로 스승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정당한 범위 내의 체벌권을 선생님에게 위임하여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육의 전통입니다. 교사의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고 이를 금지하는 여론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유지하던 영국에서조차 2010년에 영국 교육장관이 '노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는 등 체벌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인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항에서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위임하고 있고,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여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이른바 훈육·훈계 수준의 가벼운 처벌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례보다 상위 법령에서 정당한 수준의 훈계 및 훈육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교사의 처벌은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그 한계와 범위에 대한 고찰 없이 관습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처벌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둔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창시절 내재된 처벌에 대한 면역은 이후 군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현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서 위계, 권력관계에 의한 폭행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의 정도에 비해 사회적 인식 변화의 속도가 더딘 문제들에 관해 언론은 일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도는 분명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학생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사회에 널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는 경고를 함으로써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도 중요한 사익이지만 해당 보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처벌은 단지 통제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교장인 신청인이 꿀밤을 때린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훈

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의 훈육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들의 교육권까지 침해하게 되어 교권 추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교장은 공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 처벌이 정당한지 위법한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보도로 초상이 공표됨으로써 폭력교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특성상 교육자로서의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삽입하거나, CCTV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서도 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언론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